

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

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1. 조직

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

2. 시설

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(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)을 확보할 것

3. 인력

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